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. 11. 17 선고 2021가단7302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대한민국

변 론 종 결 2022. 9. 29.

판 결 선 고 2022. 11. 17.

주 문

1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2.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에게 2,992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. 2. 26.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은 때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원고는 2001. 5. 31. ‘아산시 B 대 258㎡’에 관하여 2001. 5. 30.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, 피고는 2004. 3. 5. 위 토지 중 일부를 ‘아산시 C 대 34㎡’(이하 ‘이 사건 토지’라 한다)로 분할하는 변경등기 및 2004. 2. 25.자 원고로부터의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.

【인정근거】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, 2호증, 을 제4호증의 각 기재, 변론전체의 취지

2. 원고의 주장

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공용지 취득 협의에 따른 대금 2,992,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, 원고에게 위 2,992,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판단

가.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 그 등기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 뿐만 아니라,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서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(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2다46059 판결, 1994. 9. 13. 선고 94다10160 판결, 1996. 2. 27. 선고 95다42980 판결 등 참조), 이 사건 토지가 그 전 소유자인 원고로부터 피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은바, 피고는 원고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인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이를 원고가 증명하여야 한다.

나.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라는 위 2,992,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,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, 오히려 을 제1, 2호증, 을 제3호증 1,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손실보상협의 요청절차를 거쳐 2004. 3. 5.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촉탁을 하면서 그 첨부서류의 하나로 원고가 스스로 수기로 그 내용을 기재하고 인장을 날인하여 작성된 ‘공공용지 취득협의서’(취득협의성립일: 2004. 2. 25., 대금: 2,992,000원)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.

4. 결론

그렇다면,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동호